

# 공공정보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pyright of Public Materials

조소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안계성,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Cho So-Youn, Korea Database Promotion Center

Ahn Gye-Sung, Korea Database Promotion Center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공공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각종 법·제도적인 문제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과 관련한 현행 법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는 살피고,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외 주요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단간의 공공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1. 공공정보와 저작권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한 정보 활용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최대 정보 생산자인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민간의 공공정보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 더욱 현실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같은 민간의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증가는 공공정보의 저작권을 비롯한 각종 법적 지위에 대하여 새로이 되돌아 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본래 저작권제도는 사적 영역을 규제하는 제도에서 출발하였으며, 인터넷 환경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사적 영역이 공적영역과 명확하게 구별되어 왔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이 도래하면서 공적·사적인 영역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혼재하게 되었고, 더 이상 공적·사적인 영역의 구별이 무의미하게 되어가고 있다. 사적 영역을 규제하던 저작권제도는 공적 영역에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이는 공적영역을 규제하고 있던 각종 이념, 제도와의 충돌을 예견케 하고 있다(名和小太郎 1998).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공정보 역시 몇몇 예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저작권은 사권으로서 배타적인 권리인 반면 공공정보는 그 특성상 공공재적인 특성이 강하므로 사적인 저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문제발생의 소지가 많다. 즉 공공정보에 대하여 저작권과 같은 강력한 배타권을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 독점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며, 이는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공정보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공공정보에 대한 법적인 지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정보의 활용 및 유통촉진과 관련한 법률로는 저작권법, 국유재산법, 정보공개법 등이 있다. 이들 각각을 살펴보고 공공정보의 원활한 활용에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2. 공공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법·제도 현황

#### 2.1 저작권법

국내 저작권법은 법령이나 판례, 고시·공고·훈령 등과 같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해 1)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의 목적상,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위 4가지 규정에 속하지 않는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공공기관이 공공정보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정보가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이 저작자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문학·학술·예술이란 지적·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송영식·이상정 1997, 45)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창작성 역시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든 것이면 있다(송영식·이상정 1997, 46)고 본다. 법의 취지상 저작물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으므로 공공정보 역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든 표현되고 있다면 충분히 저작물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관측 데이터나 각종 조사 정보와 같은 사실적인 정보들 역시 특정 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면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저작물의 대상이 된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9조에서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로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 역시 그들의 업무상 작성된 모든 공공정보에 대하여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저작권법상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공공정보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공공정보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한을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이 공공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개별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가능하다.

## 2.2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법 제3조 제1항 국유재산의 범위에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실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가 규정되어있는데, 이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정보 저작물에 대해 정부가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이 명확해진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잠중재산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저작권이 어디에 속하는 지에 대해서 법규정상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행정재산의 경우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보존재산의 경우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 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현재 기상청, 특허청, 통계청 등이 별도의 자체 규정에 의해 공공정보를 민간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

## 2.3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은 그 소관 하에 있는 각종 공공정보를 소유하며, 임의대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의무 및 역할을 고려할 때,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공적인 업무 수행으로 제작된 각종 정보에 대해서 국민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으로 칭함)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공공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총무처 1997). 그러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단순 열람이나 복사에 그칠 뿐, 국민의 공공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재이용을 통한 상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 3. 공공정보 활용의 문제점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해당 공공기관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배타권을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은 제3자의 공공정보의 이용 요청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각종 공공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민간과 경쟁적으로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공공기관은 공공정보에 대해 독점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셈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감안할 때 지나친 권한부여라고 여겨질 수 있다. 공공정보는 공공재적인 성향이 강하다. 즉 국민의 세금에 의해, 업무상 제작된 각종 정보에 대해 국민은 자유로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현 국내법에 의할 경우 개인은 공공정보의 이용에 대해 어떠한 결정권도 없는, 상대적 약자의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물론 정보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구에 의해 각종 공공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이는 단순 열람 및 복사 수준에 그치고 있고,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상업적 이용을 통한 수익 창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우리법은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역시 국유재산의 일종으로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운용되

어야 한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은 유체물(부동산 등) 중심으로 규정된 법으로서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하다. 평가액, 사용료율 등의 제반 운용 규정들이 유체물의 경우만을 예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용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여지껏 공공기관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예가 흔치 않았으므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지적재산권은 유체물과 달리 그 평가액 및 사용료율의 일률적인 책정이 곤란하다는 점에 있다. 공공정보 이용 기준의 부재는 공공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양측에게 혼란을 가중케 할 것이다.

이처럼 공공정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는 우선 공공기관에게 제한없이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정보 독점의 가능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와 공공정보와 관련한 제반 이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 4. 해외의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정책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인정 및 취급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배른협약은 제2조 제4항에서 '입법·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고 함으로써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각국에 위임하고 있고,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는 각국의 역사적인 정보정책의 흐름 속에서 그 국가의 실정에 맞게 채택되어 왔다.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미국이 대표적이며, 저작권을 인정하는 국가로는 영국이 대표적이다. 어떠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공공정보에 대한 가치인식이 새롭게 변모하면서 각국에서는 공공정보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 4.1 미국

미국의 공공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국민의

공공정보에 대한 폭넓은 접근 제공과 규제없는 이용도모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입장은 1976년 저작권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저작권법에는 미국연방정부의 어떠한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문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은 저작권법 규정으로 연방정부가 저작자의 경제적, 법적인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자유 접근 정책을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민간의 공공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은 정보자유법에 의해 현실화되었다. 정보자유법이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공개 수수료는 실비만으로 한정되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법 및 정보자유법은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민간 활용 정책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정보의 가치가 점차 부각되면서 공공기관은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민간의 공공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 공공정보의 상업적 재이용 금지, 정보이용에 대한 과도한 비용 요구(copyright-like control : 저작권 유사 통제) 등을 시도하는 경향을 드러냈다(Robert Gellman 1996).

이에 의회는 미국의 정보공개 정책을 보조하고, 공공기관의 저작권 유사 통제 관행을 제재함과 동시에 민간에의 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서감소법(Paperwork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i) 공공기관은 공공정보가 공중에 시의 적절하게 배포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독점적이거나 제한적인 혹은 기타의 조치를 행하여서는 안되고 ii) 공공기관은 정보의 이용, 재판매, 재배포를 제한하거나 재재하여서는 안되며, iii) 공공정보의 재판매 혹은 재배포에 대해서 수수료나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며, iv) 공공정보의 제공(배포)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Robert Gellman, 1996).

이처럼 미국은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의 자유이용, 무료제공(실비는 제외)을 원칙으로 하는 철저한 이용자 중심 정보 정책을 채택,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정보 정책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다. 우

선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공정보의 대상이 연방정부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외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독점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정보 배포에 대한 적절한 시장 가격 비용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NTIS)가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지원하는 법률이 속속 채택되고 있다는 점(Robert Gellman 1996)은 일률적인 무료 제공 정책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인 발전으로 사적·공적인 영역의 구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정보 통제 욕구는 디지털 환경의 발전과 함께 더욱 증가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기본 정보정책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 4.2 영국

영국은 미국과 달리 공공기관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나 각종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저작권은 소위 「Crown Copyright」라고 일컬어진다. 영국에서 Crown Copyright은 1911년부터 저작권법에 명문화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1998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의 제163조에 명시되어있다.

한편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통제 및 운영은 HMSO(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 영국 정부 간행물 출판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의 이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HMSO의 저작권과(Copyright Unit)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HMSO는 이용저작물의 종류 및 이용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의 이용허락계약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98).

영국은 공공기관에게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인

- 1) NTIS는 연방정부에 의해 제작된 과학·기술·공학 정보를 수집·배포하는 일종의 클리어링 기관으로서, 정보의 이용에 대해 실비 이상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익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독립채산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함으로써 정보의 운용권을 부여하였으나, 공공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감안하고 공공정보의 민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침을 마련, 활용하고 있다. HMSO는 1992년 공공저작물에 대한 가격정책의 기초가 되는 「수수료 및 요금 지침(The Fees and Charges Guide)」을 마련한 바 있고,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통상산업성)는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지침(Government-Held Tradeable Information Guidelines for Government Departments in Dealing with the Private Sector)」을 마련하여 이의 이행을 권장하고 있다(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98).

이처럼 영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함으로써 공공정보에 대한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강력한 공공정보 공개 정책 압력 및 국민의 정보 활용 요구의 증가로 인해 Crown Copyright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민은 이미 국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제작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당연할 뿐 아니라, 민간에 의한 정보 부가가치 창출을 강려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저렴하고 용이한 이용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함으로써 민간과 경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몫이 아니라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98).

## 5. 공공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대응 방안

### 5.1 공공정보의 저작권 인정 여부

공공정보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문제는 각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위 및 성격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미국·영국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어떠한 정책을 채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공공기관에게 업무상

작성된 각종 공공정보에 대해 사권과 유사한 제한없는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의 가치가 한층 높아지고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여 오던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공공정보에 대해 일률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체도를 채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기능적 성격에 따라 공공정보의 판매수익이 공공정보의 제작비 혹은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경우도 있다는 점 역시 사실이며, 오랜 전통을 단시일내에 바꾸는데 따르는 제도적, 심리적인 부담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공기관에게 저작권을 인정함으로써 공공정보의 오용을 방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의 생산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따라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게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로써 파생되는 정보 독점 등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정책을 개발·시원함으로써 규제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 5.2 공공정보의 저작권 보완 정책

공공기관에게 저작권을 인정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정보독점, 민간업체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적 조치, 부당한 거래 조건 강요 등에 대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과 관련하여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 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공공기관의 직접 정보 서비스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자칫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독점을 야기하거나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 독점을 견제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 마련이 요청된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i)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통한 기본 정보 자료의 수집, 정리를 의무화한다. ii) 보유 정보 자료 및 이의 가용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iii) 공공정보를 민간으로 하여금 가공·시장화시킴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부당한 독점적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 iv) 공공정보의 민간 제공시 비용 산정에 대해서, 당해 공공정보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시장 가격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보의 제공에 소요되는 실비만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v) 공공기관이 직접 정보 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에 이미 민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민간 부문과의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시켜서는 안된다. vi) 공공기관이 직접 정보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의 민간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향후 민간 부문의 참여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U.K. DTI. 1996).

둘째, 공공기관의 공공정보에 대한 불합리한 정보 독점, 부당거래를 조사하고 감독할 총괄기관의 설립이 요청된다. 공공기관의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남용을 방지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총괄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이 위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또는 강요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요청된다. 총괄기관은 이 외에도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예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함으로써 공공정보의 이용 기준을 확립, 정착시키는 역할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따라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예가 전무한 경우가 많아 기관의 업무 부담이 예상되는 바, 공공정보 이용에 대한 제반 운영 노하우를 지원하는 중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 내에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배정,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공공정보 이용 요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의 이용 요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민간에 의한 공공정보 활용 선례의 부족은 실질적으로 민간의 공공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민간의 요청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처도 미흡한 형편이다. 따라서 담당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용 환경을 정착시키는 일이 필

요하다. 담당 전문가는 하루빨리 보유 정보의 가치를 파악하고 이용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민간의 정보 요청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송영식·이상정. 1997. 「저작권법개설」, 서울:화산문화.
- 총무처. 1997.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 총무처.
- 大橋 有弘. 1997. “公的データ流通促進のための法的・制度的課題”. 『情報管理』, Vol.39 No.10 (Jan. 1997):760-767.
- 名和小太郎. 1998. “公共的アプリケーションの著作権”. 『情報社會の知的所有權』, 科學技術振興事業團・科學技術情報事業本部
- Anne Fisher. 1998. “Crown Copyright in the information Age”. *Managing Information*. June 98-5:5 : 31-33.
-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98. *Crown Copyright in the information Age*.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ISBN 0-10-138192-1.
- Robert Gellman. 1996. “The American model of access to and dissemination of public information”. *Access to Public Information Conference, 1996.6.27-28*. [Stockholm].
- Scott Hatmaker. 1997. “Government Information: Public Domain or User Beware”. *Information Outlook*, December 1997 : 39
- U.K. DTI.. 1996. *Government-held Tradeable Information : Guidelines for government departments in dealing with the private sector*. London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